

의안번호	제 988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경 상 남 도 아 동 학 대 예 방 및
보 호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제 출 자	옥은숙 의원 외 42명
제출 연월일	2021. 5. 2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988 호
------	---------

발의연월일 : 2021. 5. 21.

발 의 자 : 옥은숙·황보길·김석규·김재웅·
김현철·성연석·손태영·이종호·
장종하·김영진·김진기·김호대·
박문철·박옥순·빈지태·송순호·
윤성미·김성갑·손덕상·원성일·
이병희·이상열·황재은·강근식·
김진옥·류경환·송오성·이옥선·
성동은·김경수·김윤철·김지수·
박우범·성낙인·신영욱·이상인·
박정열·이영실·김경영·백수명·
신상훈·심상동·정동영의원(43명)

1. 제안이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함으로써 도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의 신설(안 제3조의2)

나. 아동학대 발견 신고 조항의 제목 및 내용 개정(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조항의 내용 개정(안 제6조)

라. 위원회 기능 조항의 제목 및 내용 개정(안 제7조)

마. 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조항의 제목 및 내용 개정
(안 제10조)

바. 계획수립 등 조항의 제목 및 내용 개정(안 제11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조항의 신설(안 제11조의2)

아.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관한 조항을 규정(안 제13조)

자.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의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를 “경상남도”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도지사의 책임)”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내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과 위촉직을 두며, 위촉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 아동학대 업무 담당 국장

나. 경상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 국장

다. 경상남도경찰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 과장

제6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피해아동보호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아동보호”를 “피해아동보호”로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 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도 경찰청”을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상남도경찰청”으로, “협력체계”를 “협력 및 지원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계획수립 등)”을 “(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그 결과물을 발간하여 경남공보에 공고”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에 대한 학대의 발견 및 보호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 의무자 및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 보호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u>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아동보호전문기관</u>”이란 <u>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u>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임) ① <u>도지사</u>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u>경상남도</u>----- ----- ----- -----.</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피해아동</u>”이란 <u>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u>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u>아동의 보호자는 아동</u>을 가정에서 <u>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u>하여야 한다.</p> <p>② <u>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u></p>

제4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두며, 위촉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도 여성가족아동국장

나. 도 교육청 담당국장

다. 도 경찰청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도의회의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내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위촉직 위원-----

1. -----

가. 도 아동학대 업무 담당 국장

나. 경상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 국장

다. 경상남도경찰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 과장

2. -----

가. 경상남도의회의원

나.·다. (생략)

④·⑤ (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치료·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 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도 경찰청,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체계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

2. ----- 피해아동보호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 피해아동보호-----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① -----

-----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상남도경찰청-----
----- 협력 및 지원체계-----.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유형, 증감추이, 처리결과 및 대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그 결과물을 발간하여 경남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에 대한 학대의 발견 및 보호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③ 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단체,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의 신고의무자 및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경비지원) 도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p><u><신 설></u></p> <p><u>제14조 (생 략)</u></p>	<p><u>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1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아동 학대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 아동과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u></p>
--	--